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2019년 설립예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조례 제정안은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제출

나. 주요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사회서비스정책팀 윤준호 (☎ 2133-7747)